

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안내

1

대상자 조회

- (조회기간) '22.3.24.(목) ~ 사업종료 까지
- (확인방법)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기타 > 돌봄인력 한시적지원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
- (구축조건) '22.3.22.기준 급여비용 청구 및 인력신고자료 기반 구축
 - ① (대상자) '22.1월 급여제공으로 청구이력이 있으면서 사업공고일('22.3.14.)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
 - (제외)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
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중인 장기요양요원
 - ② (대상여부) 사업공고일 현재 재직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
 - (대상) 지원금 신청 가능자
 - (비대상) '22.3.14.기준 퇴직, 자격정지, 직종변경 등으로 지원 제외

※ 근무종료일과 퇴직일 차이는?

- (근무종료일) 종사자의 마지막 근무일로 서비스 제공 가능일
- (퇴직일) 근무종료일+1일로 서비스 제공 불가능
- (예시) 인력신고 현황에 퇴직일이 '22.3.14일이면 지원 대상? N
인력신고 현황에 퇴직일이 '22.3.15일이면 지원 대상? Y

※ 인력신고현황 확인은?
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>요양자원>장기요양기관관리>장기요양기관 현황조회

- ③ '22. 3.14.기준 재직 중인 장기요양기관별 각각 구축
 - 장기요양요원의 소속 기관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자료 구축, 지급 결정 시 지원금 신청 순으로 1회만 지급
 - ※ 동일기관에 겸직 등 직종을 달리하여 재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>간호(조무)사>물리(작업)치료사>사회복지사 순으로 1건만 자료 구축

2

지원금 지급 대상

- (지원대상) '22.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*
 - (자격기준) 사업공고일('22.3.14.)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
 - *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치과위생사
 - (제외대상)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
<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>

구분	'21년 12월	'22년 1월	'22년 2월	'22년 3월 14일	지원대상
서비스 제공내역 (○, ×)	○	○	○	재직	지원대상
	○	×	○	재직	대상아님
	×	○	×	재직	지원대상
	×	×	○	재직	대상아님

3

지원금 신청 · 지급

- (신청기간) '22. 3.28.(월) ~ '22. 4. 1.(금)
- (신청방법)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▶ (장기요양요원)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(서식1) 작성
 ※ (유의사항) 신청대상자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



▶ (장기요양기관) 지원대상자 재직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 포털 등록 및 전송
 ※ (재직확인) '22.3.14.기준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여부 기관 대표자 확인
 ※ (신청서) 한시지원금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자체 보관(5년)

- (분산신청) 장기요양기관 종별 및 기관기호 끝자리로 신청일 분산

월(3.28.)	화(3.29.)	수(3.30.)	목(3.31.)	금(4.1.)
시설급여	재가급여 (기관기호 끝자리 홀수)	재가급여 (기관기호 끝자리 짝수)	전체 가능	전체 가능

※ (시설급여)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※ (재가급여)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
- (지급기간) '22. 3. 31.(목) ~ 4. 11.(월)
- (지급금액)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
 - ※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

- (신청서 확인) 개인정보 제공 동의, 계좌번호, 연락처 등 기재사항 확인
 - ※ 한시지원금 신청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신청 가능
- (재직 확인) 재직여부 확인 시 지원금 신청인의 퇴직 및 직종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
 - (재직자)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병가 또는 휴직중인 직원 포함
 - (재직자가 아닌 경우)
 - 퇴직자이나 신고 누락(지연)으로 지원대상자로 발체된 경우
 - 직종 변경 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이 아닌 경우
 - ※(예시) '22.1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으나 '22.3.14.현재 시설장으로 변경된 경우
- (결과확인) 신청일로부터 2일 경과 후 공단 접수 상태 확인
 - 반송건은 '계좌점검결과' 란에 반송으로 표기됨
- (반송건 확인)
 - (입력 기간) '22.3.31(목) ~4.11.(월)
 - (예금주 상이) 통장상의 예금주명과 실제 성명이 상이한 경우로 정확한 정보 재확인, 입력·전송
 - 두음법칙 등으로 상이한 경우 통장상의 예금주명으로 수정
 - ※ (성명)유버들 → (예금주명) 류버들인 경우 류버들로 자료 입력
 - 외국인으로 성명이 상이한 경우 통장상의 예금주명으로 수정
 - ※ (성명)에너밸리 제임스 → (예금주명) '에너밸리'인 경우 에너밸리로 입력
 - (계좌번호 상이)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입출금 가능한 통장 재확인, 통장상의 예금주, 계좌번호 등으로 재입력·전송

○ (신청대상)

- 인력 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(누락)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
 - ① '22.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
 - ② '22.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
-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
○ (신청기간) '22. 4. 4.(월) ~ 4. 8.(금), 09:00 ~ 18:00

※ 한시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,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

○ (신청인) 장기요양요원

○ (신청방법) 이의신청서 작성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 확인을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(팩스)

○ (증빙자료)

- (급여비용 청구 누락)
 - (기본조건) '22.1월말까지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일정 등록전만 인정
 - (서류) 급여제공기록지, RFID전송자료, 종사자 근무편성표, 종사자 출퇴근기록부, 간호일지 등
- (인력신고 누락)
 - (서류) 근로계약서(직종, 근무기간, 계약일 등 확인용), 급여제공기록지, 출퇴근기록부 등
- (타인계좌 입금요청)
 - (서류) 위임장, 신분증(위임자, 위임 받는자), 통장사본(위임 받는자)

○ (처리기한)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○ (결과통보)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

○ (접수처) 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

구분	팩스번호	문의처
공단 본부(요양교육부)	033-749-9662	1577-1000 (고객센터)
서울강원지역본부	02-3275-8013	
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	051-801-4228	
대구경북지역본부	053-620-8016	
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	062-260-9020	
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	044-589-2323	
인천경기지역본부	031-229-0429	